한국체육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제정 2010. 3. 5. 제51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(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- ②위원장은 교무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체육학과장, 특수체육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외부인사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교원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교직이수예정자 선발
- 3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
- 4.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
- 5.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,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의 교원자격 검정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

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운영)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 (2010. 3. 5. 제519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